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7. 12. 4(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의안번호 제2007 - 59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16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산림환경과)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 변경

○「폐기물관리법」

- 제13조 ⇒ 제14조(안 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12조제1항・제21조제1항)
- 제26조 ⇒ 제25조(안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부터3항)
- 제63조 ⇒ 제68조(안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4조)

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항 신설(안 제11조제5항)

○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Ⅵ.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112조

○「폐기물관리법」제1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000천원(2007년 제1회 추경예산확보)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07. 10. 18. ~11. 0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존과 폐자원 모으기 활성화를 위하여 폐활용품을 수집해오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수집 장려금을 1998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 또한 2007. 5. 25.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③ (생 략)	제5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법 제14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68조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법 제68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 법 제25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25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법 제25조 ----------.
③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 등을 추가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 법 제25조 ----.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68조---------- ---------- ---------- ---------- ---------- ---------- ----------.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법령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관계법령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관계법령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2008.1.4]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관계법령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개정 2004.3.12.>)제2항제4호나목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